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 등 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20명(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과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을 각각 국가데이터연구원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직무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과학관에 방문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함.

다. 한국정책방송원에 국무회의 등의 중계와 촬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온라인 채널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 라.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 마.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 바.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수산동물질병의 진단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 사. 국가통계연구원에 통계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함.
- 아.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재난 위험평가 및 예측분석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8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중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2명”을 “8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직무란 중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호·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8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1명”을 “12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3명”을 “35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42명”을 “14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1명”을 “63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명칭란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데이터연구원(종전의 국가통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2명”을 “5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명칭란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64명”을 “267”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 중 정원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 중 정원 2명(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6.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 중 정원 2명(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가데이터연구원

21. 관세국경인재개발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국립수산물과학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026년 1월 1일
2. 제24조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의2제7항, 제29조의8제2항 및 제2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2일
3.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산림과학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026년 1월 6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기획예산처장관</u> ----- --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 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 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 영기관의 운영 · 관리 및 시설 · 장비 등의 운영 · 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u>기획재정부장관</u> 이 정 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 입) ----- ----- ----- ----- ----- ----- ----- <u>기획예산처장관</u> ----- -----.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 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u>기획재정부장관</u>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예산의 이월) ① (생략)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u>기획재정부장관</u>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① ~ ⑥ (생략)	4. ----- ----- <u>기획예산처장관</u>----- ----- ② ----- ----- ----- <u>기획예산처장관</u>----- -----.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 ----- ----- ----- ----- ----- --- <u>기획예산처장관</u>----- -----. 제28조(예산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기획예산처장관</u>----- -----.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기획재정부장관</u>에게 알려야 한다. ⑧ (생략)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① (생략)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u>기획재정부장관</u>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u>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u>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과 같음) ⑦ ----- ----- ----- ----- <u>재정경제부장관</u>-----.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기획예산처장관</u>-----.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① ----- ----- ----- <u>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u>-----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508